#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인종(Rasse)'부분 개정에 관한 논의

독일 하노버 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조하늬

## 1. 들어가는 말

종(種)이란 한 개체군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유전학적 분화를 말한다. 사람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인간게놈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인간의 종(menschliche Rasse)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1995년 유네스코 선언에서 인종이라는 용어 사용을 포기할 것이 요청되었다.[1)]

그럼에도 독일 법조문에는 아직까지 인종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차별금지조항 뿐만 아니라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은 "누구든지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Rasse),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불이익 혹은 우대를 받지 아니한다."[2)]고 규정하며, 여전히 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 연방정부는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을 위한 법률초안(Gesetzentwurf zum Allgemeinen Gleichbehandlungsgesetz)에서 인종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제정된 독일 일반균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제1조에 인종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3)]

현재 독일에서는 인종차별적 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자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이와 더불어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의 인종이라는 용어를 삭제, 다른 문구로 대체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인종이라는 용어사용의 문제

---

1) M.Kutting, Isabella; Amin, Naziar, Mit "Rasse" gegen Rassismus?, DÖV 2020, 612 (613).

2)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 원문: Art. 3 (3) [1]Niemand darf wegen seine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Rasse,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en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3)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n Die Linke, Deutscher Bundestag 19. Wahlperiode, Drucksache 19/20628 vom 01.07.2020, S. 6.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용어를 법조문, 특히 기본법에서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20년 6월 독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의 기본법상 인종이라는 용어의 삭제 제안을 시작으로 그 제안에 대한 다른 정당 및 학계의 반응 그리고 대체용어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기본법상 인종(Rasse) 개념의 도입배경

인종이란 용어는 나치정권하에서 특히 유대 출신에 대해 자행되었던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법에 포함되었다. 인종차별의 명백한 금지는 기본법에 의도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집단 특징적이고 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형질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4]

인종이라는 용어는 1449년 스페인의 '순수혈통에 관한 법령(Statut von der Reinheit des Blutes)'에서 법적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9세기까지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었다. 다만 이 개념은 처음부터 공통의 외향적 형질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유전되는 특정한 형질과 관련되었던 용어였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인종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노예제도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특히 우생학이라는 사이비학문에 따른 분류화가 진행되었다. 결국 종족우월감이라는 망상(Rassenwahn)은 홀로코스트에서 극에 달하였고 체계적인 집단학살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다.[5]

독일 헌법제정위원회(Parlamentarischer Rat)에서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 인종이라는 개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이 용어는 명백히 나치정부의

---

4) Diskussions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03.02.2021, S. 6,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Ersetzung_Begriff_Rasse.html, 최종검색일: 2021. 3. 5.

5)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n Die Linke, Deutscher Bundestag 19. Wahlperiode, Drucksache 19/20628 vom 01.07.2020, S. 6.

체계적 학살정책과는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독일 헌법제정위원회가 인종이 존재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6]

### 3. 녹색당의 기본법 개정 제안

#### (1) 제안 배경

2020년 2월 19일 독일 하나우(Hanau)에서 인종차별주의적 테러가 발생하였다. 이 테러 사건은 43세 Tobias Rathjen이 일으킨 것으로, 시샤바(Shisha-Bar, 물담배를 피울 수 있는 바), 매점 및 술집에서 9명의 시민을 총으로 살해 한 후, 가해자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72세인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하였다. 이 사건은 명백히 인종차별적 동기로 발생한 극우적 테러행위로 밝혀졌는데. 9명의 희생자 모두 이민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이 중 5명은 터키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7]

테러가 발생한 다음 날, 하나우에서 독일 녹색당은 독일 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종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3월 1일 인종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내용을 당 차원에서 확인하였다.[8]

#### (2) 제안이유

2020년 6월 독일 연방의회의 녹색당 교섭단체장인 Katrin Göring-Eckardt와 Anton Hofreiter는 기민·기사당 연합(CDU/CSU Union), 사회민주당

---

6)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n Die Linke, Deutscher Bundestag 19. Wahlperiode, Drucksache 19/20628 vom 01.07.2020, S. 6.

7) Elf Tote nach Schüssen in Hanau, 20.02.2020, https://www.mdr.de/nachrichten/deutschland/panorama/schiesserei-hanau-100.html, 최종검색일: 2021. 4. 7.

8) Beschluss Parteirat Aktionsplan gegen Rassismus, Berlin, 01. 03. 2020, https://cms.gruene.de/uploads/documents/Beschluss_Parteirat_Aktionsplan_gegen_Rassismus.pdf, 최종검색일; 2021. 3. 23.

(SPD), 자유민주당(FDP), 좌파당(Die Linke)에 대하여 기본법상의 인종을 삭제하고, '인종주의적(rassistisch)'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였다.[9]

녹색당 대표인 Robert Habeck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부의장인 Aminata Touré은 "이제는 인종주의(Rassismus)라는 것을 잊어버려야 할 시기이다"라고 언급하며, 이 개념은 인간의 하위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본법의 요청과 정신에 반한다고 하면서, 인종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10]

## 4. 녹색당의 제안에 대한 반응

### (1) 다른 정당들의 견해

#### 1) 독일대안당(AfD) 반대견해

녹색당의 제안에 대해, 보수정당들은 인종 개념을 기본법에서 삭제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독일대안당 국내정책 대변인인 Gottfried Curio는 녹색당이 "사실상 개념의 검열을 통해 좌파식의 해석을 강요한다."라고 경고[11]하며, 인종 개념 삭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대안당 연방대표(Bundesvorsitzender) Stephan Brandner는 "기본법은 이데올로기적인 정치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9) Grüne schlagen neue Fassung vor: "Rasse" raus aus dem Grundgesetz?, in: Legal Tribune Online, 12.06.2020,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rasse-art-3-grundgesetz-streichung-rassitisch/, 최종검색일: 2021. 3. 17.

10) Grundgesetz ohne Rasse - bereite Unterstützung für Grünen-Forderung, Meldung der beck-aktuell-Redaktion vom 10.06.2020, becklink 2016546,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grundgesetz-ohne-rasse-breite-unterstuetzung-fuer-gruenen-forderung, 최종검색일: 2021. 3. 15.

11) Grüne wollen „Rasse" aus dem Grundgesetz streichen- von der AfD hagelt es Kritik, 12.06.2020, https://www.focus.de/politik/deutschland/merkel-wuenscht-sich-debatte-gruene-wollen-rasse-aus-dem-grundgesetz-streichen-von-der-afd-hagelt-es-kritik_id_12094987.html, 최종검색일: 2021. 3. 31.

있어서 기본법 제정자 역시 상당한 심사숙고 후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좌파들의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개념의 사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기본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으며 순전히 이데올로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법의 개정을 계획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좌파인 녹색당식의 이데올로기(linksgrünen Ideologie)의 명백한 모순이다. 만약 인종이 존재한다면, 현재의 기본법문의 표현에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올바르게 선택되었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는 반대로 인종의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인종주의도 없어야 하고 지난날 계속 논의해 왔던 것들은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기본법은 그때그때 마다의 기분에 따라 맞춰지거나 변화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다.[12]

### 2) 다른 정당의 찬성견해

이와는 반대로 다른 정당들은 인종 개념 삭제에 찬성하는 견해를 피력했다.[13] 독일 자유민주당 교섭단체 의장인 Marco Buschmann은 "기본법은 명백히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것을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좌파당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장관 Christine Lambrecht도 마찬가지로 인종이라는 용어의 삭제에 동의하였다.

독일 사민당의 한 정치인에 의하면, 기본법의 제정자가 기본법 제정 당시 나치시대에 자행되었던 차별의 근거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당시 이러한 개념화는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토론을 통해 더욱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의 의장인 Thorsten Frei는 기본법을 개정해야

---

12) Keine ideologischen Exzesse im Grundgesetz, 11.02.2020, https://afdkompakt.de/2020/06/11/keine-ideologischen-exzesse-im-grundgesetz/, 최종검색일: 2021. 3. 31.

13) Kontroverse um den Begriff "Rasse" im Grundgesetz, 12.06.2020, https://www.dw.com/de/kontroverse-um-den-begriff-rasse-im-grundgesetz/a-53784397, 최종검색일: 2021. 3. 24.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공동체 내에서 인종주의와 싸워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법 제3조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하였다.[14]

### 3) 좌파당(Die Linke)의 2010년 기본법 개정 제안

사실 기본법에서 인종이라는 용어 삭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녹색당이 처음이 아니었다. 일찍이 2010년 12월 독일의 좌파당은 연방정부에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인종을 삭제하고 다른 대체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다.

당시 좌파당의 개정안[15]에서, 인종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반박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극단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면서 이미 다른 나라들은 유럽연합의 반인종주의지침(Anti-Rassismus-Richtlinie 2002/43/EG)을 국내법으로 규정할 때 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대의 인류학자, 생물학자, 유전학자들에게 인종이라는 개념은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며, 1995년 유네스코 발의에서 인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없앨 것이 선언되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인간의 종을 가령 아프리카인, 유라시아인 등으로 나누었던 기존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인종의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어떠한 학문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좌파당은 이미 많은 국가와 언어에서, 특히 유럽 내 국가에서, 인간과 관련된 종(種)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국내법 문언에서도 국제법 문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종 개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6]

---

14) Kontroverse um den Begriff "Rasse" im Grundgesetz, 12.06.2020, https://www.dw.com/de/kontroverse-um-den-begriff-rasse-im-grundgesetz/a-53784397, 최종검색일: 2021. 3. 24.

15) Streichung des Begriffes „Rasse" aus der deutschen Rechtsordnung und internationalen Dokumenten, Deutscher Bundestag 17. Wahlperiode, Drucksache 17/4036, 01.12.2010.

16) Streichung des Begriffes „Rasse" aus der deutschen Rechtsordnung und internationalen Dokumenten, Deutscher Bundestag 17. Wahlperiode, Drucksache 17/4036, 01.12.2010, S. 2

### (2) 인권법학자

독일 기본법에 규정된 인종의 개념에 대한 토론에서, 독일 인권법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의 Hendrik Cremer는 이 개념을 기본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만약 기본법에 인종주의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인종이란 용어를 삭제한다면, 이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ein fatales Signal)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17]

Cremer는 앞선 2009년부터 인종이라는 용어사용의 문제를 지적하였고,[18] 2010년에는 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인종 부분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Cremer는 인종주의적(rassistisch)이라는 용어를 삽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기본법에서 인종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용어의 대체개념으로 '민족적 출신(ethnische Herkunft)이나 민족적 소속(ethnische Zugehörigke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19]

Cremer는 인종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특정한 인종에 포섭되게 하며, 그럼으로써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하는 실질적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표현은 혼란과 침묵 그리고 침해를 야기한다고 언급하며, 대체 문구로 '누구도 인종주의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Niemand darf rassistisch benachteiligt werden)'를 제안하였다.[20]

### (3) 각 주(州)

---

17) Menschenrechtler: Hinweise auf Rassismus muss im Grundgesetz bleiben, Meldung der beck-aktuell-Redaktion, 16.06.2020,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menschenrechtler-hinweis-auf-rassismus-muss-im-grundgesetz-bleiben, 최종검색일: 2021. 3. 24.

18) Cremer, Hendrik, "... und welcher Rasse gehören Sie an?„ Zur Problematik des Begriffs "Rasse" in der Gesetzgebung, Berlin: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2. Aufl. 2009.

19) Cremer, Hendrik, Ein Grundgesetz ohne "Rasse" - Vorschlag für eine Änderung von Artikel 3 Grundgesetz, Berlin: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2010.

20) Menschenrechtler: Hinweise auf Rassismus muss im Grundgesetz bleiben, Meldung der beck-aktuell-Redaktion, 16.06.2020,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menschenrechtler-hinweis-auf-rassismus-muss-im-grundgesetz-bleiben, 최종검색일: 2021. 3. 24.

2020년 5월 독일 브레멘 자유시에서 주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인종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 용어는 특히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개별적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 헌법 제2조 제2항의 인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또는 인종주의적인 이유로(oder aus rassistischen Gründen)'를 삽입하는 것으로 주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의 긴급 주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21]

독일의 브란덴부르크[22] 주의 경우, 2013년 12월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주 헌법 제12조 제2항은 이미 인종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인종주의적인 이유로(aus rassistischen Gründen)'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작센안할트[23] 주의 경우, 2020년 3월 주 헌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인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주 헌법을 '인종주의적 이유로(aus rassistischen Gründen)'라고 개정하였다. 튀링겐[24]의 주 헌법에서는 이미 인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 5. 대체용어에 관한 논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당들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의 인종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으나, 단순한 삭제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보이며 적절한 대체용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대체용어가 제안되었다.

---

21) Antrag Änderung Gesetz Entwurf vom 05.05.2020, Urheber: SPD, Bündnis 90/Die Grünen, DIE LINKE, Drucksache 20/375.

22) 현재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 제12조 제2항: "Niemand darf wegen der Abstammung, Nationalität, Sprache, des Geschlechts, der sexuellen Identität, sozialen Herkunft oder Stellung, einer Behinderung, der religiösen, weltanschaulichen oder politischen Überzeugung oder aus rassistischen Gründen bevorzugt oder benachteiligt werden."

23) 작센안할트는 2020년 주 헌법 제7조 제3항에서 인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개정하였다. 현재 작센안할트 주 헌법 제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Niemand darf aus Gründen des Geschlechtes, der sexuellen Identität, der Abstammung oder wegen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oder seiner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en oder aus rassistischen Gründen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24) 튀링겐 주 헌법 제2조 제3항: "Niemand darf wegen seiner Herkunft, seiner Abstammung, seiner ethnischen Zughörigkeit, seiner sozialen Stellung, seiner Sprache, seiner politischen, weltanschaulichen oder religiösen Überzeugung, seines Geschlechts oder seiner sexuellen Orientierung bevorzugt oder benachteiligt werden."

### (1) 민족적 출신(ethnische Herkunft)

2010년 좌파당이 인종 개념의 삭제를 제안할 당시, 대체 용어로 '민족적, 사회적 그리고 지역적 출신(ethnische, soziale und territoriale Herkunft)'이 제시되었으며, 2020년 10월 독일 자유민주당의 Buschmann 또한 '민족적 출신(Ethnische Herkunft)'을 인종 개념을 대체 할 용어로 제안하였다.[25]

### (2) 인종주의적(rassistisch)

2020년 7월 1일 좌파당에서 제안한 개정초안에 따르면, 2010년에 제시했던 대체용어인 '민족적, 사회적 그리고 지역적 출신(ethnische, soziale und territoriale Herkunft)'에서 벗어나, '인종주의적(rassistisch)'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Niemand darf'뒤에 'rassistisch oder'를 삽입하고 'seiner Rasse,'를 삭제하며, 제3문으로 '국가는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차별금지 조치를 실행하며, 현존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Der Staat gewährleistet den tatsächlichen Schutz vor Diskriminierung, fördert die Durchsetzung des Diskriminierungsverbots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를 새롭게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26]

좌파당은 개정초안에서 "인종주의적이라는 용어는 인종이라는 용어와는 다르게 이미 비가치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 사이에 종이 존재한다는 표현과 명확히 구분되며 동시에 이러한 잘못된 표현을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인종주의적

---

25) Grundgesetz ohne Rasse – bereite Unterstützung für Grünen-Forderung, Meldung der beck-aktuell-Redaktion vom 10.06.2020, becklink 2016546,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grundgesetz-ohne-rasse-breite-unterstuetzung-fuer-gruenen-forderung, 최종검색일: 2021. 3. 15.

26)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n der Fraktion die Linke, Deutscher Bundestag 19.Wahlperiode, Drucksache 19/20628 vom 01.07.2020, S. 5.

차별금지는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인종주의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 용어는 금지하고 있는 인종주의적 차별이 어떤 주관적 요소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행위의 차별 의도 또한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전적으로 차별이 존재했는가가 중요하며,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불이익이 모두 차별금지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특히 '추정적 혹은 사실상의 민족(vermeintliche oder tatsächliche Ethnizität)'과 같은 대체용어에 대해서, "이 용어의 사용은 보호범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용어는 인종주의적 차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민족(Ethnie)의 개념도 문제가 존재한다. 이 개념 또한 집단관련 속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민족적 기준(ethnische Kriterien)'에 따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국민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며, 인종주의적이라는 개념은 원문의 축소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7]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18일에 제출된 녹색당의 개정초안에서도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의 인종 대신 인종주의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3문으로 보장의무(Gewährleistungsverpflichtung)의 삽입을 제안하였다.[28] 녹색당은 인종에 대한 대체용어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예를 들어 '민족적 출신(ethnische Herkunft)'이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이 표현으로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차별을 표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민족 때문에(wegen seiner Ethnie)' 혹은 '민족적 이유로(aus

27)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n der Fraktion die Linke, Deutscher Bundestag 19.Wahlperiode, Drucksache 19/20628, 01.07.2020, S. 7-8.

28)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n der Fraktion Grünen, Deutscher Bundestag 19. Wahlperiode, Drucksache 19/24434, 18.11.2020,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Niemand darf wegen seine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en oder rassistisch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2]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3]Der Staat gewährleistet Schutz gegen jedwede gruppenbezogene Verletzung der gleichen Würde aller Mensche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

ethnischen Gründen)' 또는 '인종주의적 이유/동기로(aus rassistischen Gründen/Motiven)'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 역시, "이 문구들은 주관적인 요소들, 차별적 의도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 영역을 축소시켜 해석할 가능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결코 더 나은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29]

### (3) 잠재적 인종주의(latenter Rassismus)/추정적 인종(vermeintliche Rasse)

독일 사민당의 대표인 Saskia Esken은 '안전성과 관련된 잠재적 인종주의(latenten Rassismus in den Reihen der Sicherheitskräfte)'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30]

독일 기독교민주연합당 Thorsten Frei는 인종은 없으며, 인종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로부터 발생된 것이라 강조하면서, '(잘못) 추정된 인종으로 인하여(wegen seiner vermeintlichen Rasse)'라는 문구를 제안하였다.[31]

### (4) 인종주의적 이유로(aus rassistischen Gründen)

2021년 2월 3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장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은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인종을 삭제하고 '인종주의적 이유로(aus rassistischen Gründen)'라고 수정하는 헌법개정 초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초안에 따르면, "기본법에서 인종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거나 혹은

29)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n der Fraktion Grünen, Deutscher Bundestag 19.Wahlperiode, Drucksache 19/24434, 18.11.2020. S. 2.

30) Grundgesetz ohne Rasse – bereite Unterstützung für Grünen-Forderung, Meldung der beck-aktuell-Redaktion vom 10.06.2020, beck link 2016546,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grundgesetz-ohne-rasse-breite-unterstuetzung-fuer-gruenen-forderung, 최종검색일: 2021. 3. 15.

31) Das Wort "Rasse" streichen – aber was kommt dann?, 17.02.2021, https://www.welt.de/debatte/kommentare/article226538811/Grundgesetz-Aenderung-Das-Wort-Rasse-streichen-aber-was-kommt-dann.html, 최종검색일: 2021. 3. 31.

다른 용어로 대체하지 않고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는 인종주의적 차별에 대하여 보호를 보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명백히 기본법상에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이 용어를 민족(Ethnie)으로 수정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이라는 용어는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인종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민족적 그룹으로 분리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헌법문언에서 '자신의 인종으로 인하여(wegen seiner Rasse)'라는 표현은 인간 사이에 구별될 수 있는 차이라는 의미에서 기본법이 인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표현인 '인종주의적인 이유로(aus rassistischen Gründen)'는 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금까지의 표현과 같은 보호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인종주의적이라는 형용사는 일반적인 언어사용에 있어서 인종주의에 해당하는 행위나 견해를 나타내며 이러한 점에서 인종주의 개념의 일부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 개정시 인종주의적이라는 용어는 집단특이적이고 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형질에 관련된 차별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유(Gründen)'라는 용어는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불평등한 행위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는 또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다른 개별 표지에 따른 차별금지 구조와도 일치한다. 가령 '인종주의적 동기(aus rassistischen Beweggründen)'라는 표현에 비해, '인종주의적인 이유(aus rassistischen Gründen)'라는 표현이 금지된 차별행위의 확인에 있어서 기본권 수범자의 차별의도가 아니라, 개별 조치의 객관적인 전체 맥락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유라는 용어는 판단기준(Prüfstein), 표지(Merkmal), 인식(Kennzeichen)이라는 의미의 기준(Kriterien)이라는 용어와는 다르며, 오히려 인종주의적 불이익에 관련된 객관적 기준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다."[32]

---

32) Diskussions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03.02.2021,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Ersetzung_Begriff_Rass

## 6. 독일 연방정부의 합의와 현재의 상황

2021년 3월 5일 독일 연방내무부장관 Horst Seehofer는 연방법무부에서 제안했던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 가장 최고의 방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연방정부는 연방법무부의 개정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33]

독일의 기본법 개정에 관해서는 기본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법 제79조 제1항 제1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기본법은 기본법의 법문을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법률은 반드시 동조 제2항에 따라 연방의회 의원의 3분의 2이상과 연방참사원 투표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요구된다.[34]

3월 초 연방정부의 기본법 개정 합의가 발표된 후, 내각(Kabinett)에서 기본법 개정에 대한 인가가 곧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개정을 위한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장관이 발의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대체문구에 대해서, 기민·기사당 연합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국내정책 대변인(innenpolitischer Sprecher)인 Thomas Middelberg는 “기본권 영역의 개정 시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만약 새로운 표현이 기존의 보호영역에 대한 제한을 야기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될 것이다.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장관의 제안은 예를 들어 독일 인권법연구소에서 정확히 지적한 그 이유[35]로 반대한다.” 고 경고했으며, 또한 기독교민주당(CDU) 법정치학자

e.html, 최종검색일: 2021. 3. 25.

33) “Rasse” im Grundgesetz: Seehofer und Lambrecht einig über Änderung, Redaktion beck-aktuell vom 08.03.2021,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rasse-im-grundgesetz-seehofer-und-lambrecht-einig-ueber-aenderung, 최종검색일: 2021. 3. 29.

34) Art. 79 GG: (1) [1]Das Grundgesetz kann nur durch ein Gesetz geändert werden, das den Wortlaut des Grundgesetzes ausdrücklich ändert oder ergänzt. (2)Ein solches Gesetzes bedarf der Zustimmung von zwei Dritteln der Mittglieder des Bundestages und zwei Dritteln der Stimmen des Bundesrates.

35) 독일 인권법연구소는 독일 연방법무 · 소비자보호부장관이 제안한 대체 문구에 대하여, 이 문구는

Jan-Marco Luczak는 “나는 기본법 제3조의 문구가 헌법미적(verfassungsästhetisch)인 이유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이유로 매우 최소화하여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헌법제정자의 의도와 이에 따른 특정 효력 및 보호효과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인종주의적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법적 용어로 추론 가능한 것인지 또는 오히려 사회학적인 용어라서 불명확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36]

기민·기사당 연합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장관이 제안한 개정문구는 사실상 그 보호범위를 축소시킨다고 비판하였으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제안된 개정안은 보호범위를 결코 축소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늦어도 부활절 직후 곧바로 내각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하였다.[37]

## 7. 나가는 말

인종차별 문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020년 5월 미국 백인경찰의 강압진압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George Floyd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발생했다.[38]

실제로 2019년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Agentur der Europäischen Union für Grundrechte-FRA)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아프리카계 출신 응답자 중 독일 거주자 48%는 지난 5년간 독일에서 인종차별적 불이익

---

‘차별하려는 동기’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차별의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차별은 존재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녹색당 역시 ‘인종주의적인 이유/동기로’라는 용어는 차별의 의도라고 하는 주관적 요소를 필요로 함으로써 보호범위를 축소시켜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BMJV verärgert Union mit “unfreundlichem Akt”, 03.02.2021,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rasse-streichung-grundgesetz-rassistisch-diskriminierung-art3-bmjv-union-spd-menschenrechte-lambrecht/, 최종검색일: 2021. 3. 29.

36) BMJV verärgert Union mit “unfreundlichem Akt”, 03.02.2021,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rasse-streichung-grundgesetz-rassistisch-diskriminierung-art3-bmjv-union-spd-menschenrechte-lambrecht/, 최종검색일: 2021. 3. 29.

37) Extremismus und Rassismus: SPD und Union streiten, 31.03.2021, https://www.sueddeutsche.de/politik/extremismus-extremismus-und-rassismus-spd-und-union-streiten-dpa.urn-newsml-dpa-com-20090101-210331-99-42587, 최종검색일: 2021. 3. 31

38) Bundesweit Großdemos gegen Rassismus, 06.06.2020, https://www.tagesschau.de/inland/georgefloyd-protest-deutschland-101.html, 최종검색일: 2021. 3. 31

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차별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비언어적 표현(22%), 모욕적 혹은 협박적 표현(21%) 그리고 폭력적 위협(8%)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다수의 차별범죄들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인종차별에 근거한 신체적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신고를 해도 변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믿고 있거나 경찰 자체를 믿지 않으며, 오히려 경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39]

물론 법문에서 인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종차별적 범죄를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순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개념을 더 이상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개념적으로 인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법문 개정을 위한 투표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법문 개정 과정에서 어떤 용어가 인종주의적 차별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결코 단순한 용어변경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인종이라는 용어는 찾을 순 없지만, 가령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에는 인종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인종이라는 용어를 법적용어로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9) https://fra.europa.eu/de/publication/2019/als-schwarzer-der-eu-leben-zusammenfass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n der Fraktion Grünen, Deutscher Bundestag 19. Wahlperiode, Drucksache 19/24434 vom 18.11.2020. S. 5에서 재인용.